



1. 참가사

※계약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회 사 명	국 문						
	영 문						
주 소 (현 소재지)							
대 표 자 명					E M A I L		
전 화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담 당 자	성 명			직 위			부 서
	휴대전화			EMAIL			
전 자 세금계산서 담 당 자	<input type="checkbox"/> 담당자와 동일시 체크바랍니다.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E M A I L			
전 시 분 야							

2. 신청내역 및 금액(부가세 포함, 유틸 및 가구신청비 별도)

구 분	단 가	금 액	비 고
독립()부스	1,800,000원 / 부스	원	면적만 제공/최소2부스이상
독립()부스	2,250,000원 / 부스	원	전시면적과 기본장치 제공
독립()부스		원	
합 계		원	

※ 전시회 참가신청서 참가비의 50%를 회사명으로 입금 후 입금확인증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잔금 납입일은 2018년 9월 30일 입니다.

※ 송금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39-4149-05 [예금주: 셉템페어스(주)]

상기와 같이 전시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의거 「Korea Truck Show 2018」 참가계약을 체결합니다.

2018년 월 일

참 가 회 사 명
대표자(계약자) (인)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18 코리아 트럭쇼"를 의미한다.
2. "참가사"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3. "주최자" 혹은 "사무국"이라 함은 "선템페어스(주)"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시기 및 참가비 납입 순서, 부스규모에 따라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사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사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회장 관리)

1. 참가사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회장 출입을 제한한다.
4. 참가사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사는 전시회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에 못질,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1. 참가사는 참가계약서 원본을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2. 참가사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2018년 9월30일 까지 납부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참가사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1. 참가사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가사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사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3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 신청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회 개시 전 3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참가사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사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출품사의 준비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예: 추가전시장 사용료)은 출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사는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와 폐기물 처리 등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참가사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사는 전시회 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참가사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사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참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또한 참가사는 **송도컨벤시아**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원상복구)

1. 참가사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전시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출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15 조 (기타사항)

본 규정 외에 2018코리아트럭쇼(Korea Truck Show 2018)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